



## 종교시설

### 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-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### 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-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
  - \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  -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\* 및 모임도 금지
    - \*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

### Q3. 정규 종교활동(미사법화예배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- 단계별 참여인원\* 기준에 따라,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\*\*하여 참여
  - \* 1단계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, 2단계 30%(두 칸 띄우기), 3단계 20%(네 칸 띄우기), 4단계 비대면
  - \*\* 예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,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
-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, 개별 공간(예, 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#### Q4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-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,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
 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-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이 모두 금지\*됨
  - 다만, 2~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 수칙 등\*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\*\*로 실외행사가 가능함
  - \* 실외행사 시 식사·숙박 금지 / 마스크 상시 착용,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,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
  - \*\* 2단계 100명 미만(99명까지 가능), 3단계 50명 미만(49명까지 가능)

#### Q5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
  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(Q3 참고)
- 단,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
  - 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**Q6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**
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    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“방송출연”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마스크 착용에외상황으로 인정함
  -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, “방송출연” 적용은 곤란함
    -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외상황으로 인정
- ※ ‘마스크 착용’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**Q7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**

- 종교시설의 재정(회계),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
  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**Q8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**

-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, 결혼식은 ‘결혼식장’, 장례식은 ‘장례식장’, 공연은 ‘공연장’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  - \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‘식당’ 방역수칙 적용

**Q9.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·숙박이 가능한데,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?**

- 종교시설 주관 모임·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, **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\*하되**
  - \* 실·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,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
  - **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, 식당·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**
  - **숙박이 동반되는 경우,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**

**Q10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?**

- 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  - 단,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

**Q11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**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
**Q12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**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**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**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**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**
  -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,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, 소모임 등도 금지됨

- \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
### Q13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-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, 종교시설 방역수칙\*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~4단계 운영 가능

- \*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

-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

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되는 보육활동·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

- ※ 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### Q14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?

-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
- ※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

**Q15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?**

- 백신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)\*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,
  - \* (예시)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,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
  - 접종완료자\*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만 구성된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고 2m(최소 1m)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·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
  - \*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,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

**Q16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2~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**

-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~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
  - \* (예시) 식사·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,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 
→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대유행/외출 금지
결정·조정 권한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중대본
기준	■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▶ 전국: 500명 미만 ▶ 수도권: 250명 미만	■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500명 이상 ▶ 수도권: 250명 이상	■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500명 이상	■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방역수칙 준수	■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	■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500인 이상 행사 시 자자체 사전 신고	■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행사 금지
집회	■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1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유흥시설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 ■운영시간 제한 x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 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 ■24시 이후 운영제한	■22시 이후 운영제한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(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는 집합금지)
클럽/텍장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■운영시간 제한 x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■시설면적 10㎡당 1명 (2~4단계) ■24시 이후 운영제한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(3~4단계)	
홀/댄스룸/게임장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■운영시간 제한 x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 ■24시 이후 운영제한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(3~4단계)	

2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식당/카페	■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 시설) (1~4단계) ■운영시간 제한 x	■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(3~4단계)	
노래(코인) 연습장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■운영시간 제한 x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 ■24시 이후 운영제한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(3~4단계)	
체육시설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류 4㎡당 1명) ■운영시간 제한 x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 (2~4단계) ■운영시간 제한 x ■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■운영시간 제한 x (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)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■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■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■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■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/안내 샤워실 운영금지
방문 판매/음료/위안/직접판매/홍보관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■운영시간 제한 x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 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 (3~4단계)	

3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학원	■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
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(관악가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			
	■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		
영화관 공연장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■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		
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■상업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	
독서실 스터디카페	■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
결혼식장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 당 1명	■천족만 허용
장례식장	■빈소별 4㎡ 당 1명	■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 당 1명	■빈소별 50인 미만 + 4㎡ 당 1명	■천족만 허용
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이미용업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입장인원 제한 x	■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
놀이공원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입장인원 제한 x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
워터파크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오락실 멀티방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판촉용 시음, 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			
상점 마트 백화점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		
카지노 (내국인)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좌석 한칸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
PC방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운영시간 제한 x	■22시 이후 운영제한

기타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■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■무관중 경기
	■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	■수용인원의 20%	■무관중 경기
박물관·미술관 과학관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의 30%
실외체육시설	■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~4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 15명) 초과 금지			
숙박시설	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
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전 객실의 3/4운영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전 객실의 2/3운영
파티룸 (공간 대여업)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 (2~4단계)		
도서관	■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
키즈카페	■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전시회·박람회	■시설면적 4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 (2~4단계)		
마사지업소 안마소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
종교시설	■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20% (좌석 내 칸 띄우기)	■비대면
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학교	■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(1~2단계)		■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■원격수업
	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			

##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# 1 적용 지역

○ 14개 시·도\*

\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### 2 적용 대상

○ (대상)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
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</li> <li>▲콜라텍·무도장 ▲홀덤·뽕·홀덤게임장</li> </ul>
2그룹(5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식당·카페 ▲노래(코인)노래연습장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</li> </ul>
3그룹(12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학원 등 ▲영화관·공연장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아미용업 ▲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 ▲유원시설 ▲오락실·멀티방 ▲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▲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PC방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경문장·경정장·경마장·각 국공립시설 ▲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숙박시설 ▲피티룸 ▲도서관 ▲키즈카페 ▲돌잔치전문점 ▲전시·화·박람회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종교시설</li> </ul>
고위험 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콜센터 ▲물류센터</li> </ul>

\*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 3 적용 기간

○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### 4 방역 수칙

○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(고위험 사업장 제외)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 중 대상시설의 1단계 수칙 적용

\*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  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○ '콜센터', '물류센터'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 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

#### <준수 의무사항>

▲콜센터	○(이용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권리자)운영자(종사자)</li> <li>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* 협력업체 근로자, 피견영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</li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수칙 준수</li> <li>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 및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차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/ul>	
<p><b>▲물류센터</b></p> <p>○(관리자운영자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</li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상 작성)</li> <li>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li>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li> <li>- 근로자 및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차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li>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</li> </ul>	<p>○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수칙 준수</li> <li>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**[5] 법적 근거**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 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종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[6] 추진내용 및 절차**

- ① (종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  
↓
- 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  
↓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 
↓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\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\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	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법 제49조 다르지 않은 경우 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경고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운영중단 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 
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(물센터, 물류센터)을 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 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 
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자체  
차단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 
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제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
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 
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